

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·관리 조례안
(한명훈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95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3.

발 의 자 : 한명훈, 박태순, 김재국
박은정, 유재수, 박은경
송바우나, 현옥순, 설호영
김유숙, 최찬규, 선현우
김진숙 의원(13인)

1. 제안이유

-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설치기준, 설치 우선순위,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5조)
- 관리대장 및 표찰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점검 및 보수,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훼손시설의 복구 및 위반행위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제11조)

3. 제정조례안 : 붙임 1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 2

5. 예산수반사항 : 붙임 3

○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6. 부서검토의견 : 붙임 4

【붙임 1】 제정조례안

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·관리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가로등”이란 자동차 전용도로, 국도, 지방도, 시도에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.
2. “보안등”이란 주택가 골목, 상가, 공장, 산책로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.
3. “조명시설”이란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기준)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설치공사는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가 시행할 것
2. 소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, 규격품, 승인품을 사용할 것
3.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(조명시설편)」을 준수할 것

②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설치 우선순위) 시장은 조명시설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

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.

1. 사건·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
2. 수해가구가 많은 지역
3. 아동·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

제5조(설치제한) 시장은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(독립가구, 창고 등)
2.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
3. 농작물 피해, 수면장애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
4. 그 밖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

제6조(관리대장 및 표찰)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.

제7조(점검 및 보수) ① 시장은 「전기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체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비용부담 등) ① 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

료는 안산시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, 공동주택, 상가,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 주체가 부담한다.

제9조(이설 및 철거)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 시설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또는 철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.

1. 조명시설의 안전 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 조명시설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

제10조(훼손시설의 복구) 시장은 조명시설을 훼손한 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반행위에 대한 조치) 시장은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1.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
2.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속	안 산 시 의 회
입 안 자	시 의 원	한명훈 의원 대표발의

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·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9-955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12월 3일
제안자 : 도시환경위원장

수정이유

- 조문 구성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, 그 밖에 규정하려는 내용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자구를 수정함.

주요골자

- 설치 등 관련 규정 신설(안 제3조)
- 조명시설 설치 시 지켜야 할 기준 중 「전기사업법」을 준수하여 실시하도록 인용 법률을 추가하고, 띄어쓰기 및 오타자 등 정비(안 제4조, 안 제9조)

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·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·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설치 등) ① 조명시설은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설치한다.

② 도로개설, 택지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,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.

안 제4조(중전의 제3조) 제1항제3호 중 “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(조명시설편)」”을 “「전기사업법」, 「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(조명시설편)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장”으로, “조명시설설치지역”을 “조명시설 설치지역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(중전의 제8조)제1항 중 “보수”를 “유지·보수”로, “안산시가”를 “시장이”로 한다.

제8조(비용부담 등) ① 조명시설 설치 및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안산시가 부담한다.

② (생략)

제9조 ~ 제11조 (생략)

제9조(비용부담 등) ① -----

-- 유지·보수-----

---- 시장이 -----.

② (제정안과 같음)

제10조 ~ 제12조 (제정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